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3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김남근ㆍ권향엽ㆍ김동아

김문수・김용만・김 윤

김한규 · 문금주 · 박지원

박해철 • 백승아 • 양부남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이용우

이재강 • 임미애 • 임호선

정동영 • 채현일 • 최민희

황정아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, 피해자보호·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지를 방문하며 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함.

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성폭력방지법"이라 한다)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 제13조제 1항제3호는 보호시설이 자립·자활 교육 실시 업무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.

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, 제48조의4,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, 동의서 제출,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 있다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피해자에 대한 주거 자립지원)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, 제48조의4,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, 동의서제출,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. ② 보호시설의 장은「장애인・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3조의2(피해자에 대한 주거
	자립지원) ① 보호시설의 장은
	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
	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「공공
	주택 특별법」 제48조, 제48조
	의4,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
	원 신청, 동의서 제출, 입주자
	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
	대리하여 할 수 있다.
	② 보호시설의 장은「장애인・
	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
	한 법률」 제17조의 주거지원
	센터 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
	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
	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
	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
	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
	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
	<u>다.</u>